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0,951,450	13,228,544
일반회계	411,054,208	12,331,626
특별회계	29,897,242	896,917
기타특별회계	29,897,242	896,9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475,726	194,272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76,644	23,299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452,325	13,570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700,000	21,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49,558	4,487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317,999	159,54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173,898	125,217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248,000	37,440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0,603,092	318,09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027,02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